◉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-39호

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6월 30일

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처분대상

업체명	업종 (영업등록번호)	대표자	소재지
스피드	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(제20200006003호)	박*동	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365번길 8, 1층
S.M수산	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(제20140128280호)	김*용	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(활어양육동 2층 214호, 국제수산물도매시장)
뉴에어임포터	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(제20180004125호)	김*우	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26번길 9, 708호

2.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

○ 과태료 30만원 부과(스피드, S.M수산)

- 납부기한 : 2022. 7. 29.까지

○ 과태료 60만원 부과(뉴에어임포터)

- 납부기한 : 2022. 7. 29.까지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

○ 위생교육 미이수(2021년도 보수교육)

4. 근거법령

○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17조 제1항 규정 위반

○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4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[별표2] 2. 개별기준 가. 규정에 의한 처분

5. 기타사항

○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가.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

나.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

다.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

라.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(監置)

○ 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납입고지서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(051-602-6119)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